

제408회 임시회

' 23. 4. 21.(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3.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충청북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의 마련 시행(안 제3조)
-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안 제4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5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6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문 구성 >

조 항	조 제 목	근거법령
제1조	목적	
제2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
제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
제4조	의견의 수렴	
제5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시행령 제13조제2호
제6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법 제27조제2항

-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함.
 - 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충청

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9조제3항¹⁾에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지원 ▲의견의 수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49년부터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5%를 차지하며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시군 중 충청북도는 6개의 시군이 지정되었으며,
 -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매년 1조원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1)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와 시·군·구는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및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 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여건에 맞는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조성하였고, 충청북도는 2022~2023년 1,104억원을 교부받아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증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 **사업위치** :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 인구감소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 행안부 지정·고시('21.10.19.)
- **총사업비** : 1,104억원('22~'23년 교부금액)
 - **광역지원계정** : 278억('22년 119억, '23년 159억)

(단위: 억원)

시·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서울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80	119	25	23	14	14	12	9	9	4	0	0
배분금액 ('23년)	505	485	345	320	297	240	159	35	32	19	19	16	13	13	5	0	0

- **기초지원계정** : 826억('22년 354억, '23년 472억)

- **사업량** : 31개 사업(광역 12, 기초 22, 광역&기초 중복 3)
- **사업내용** : 출산·양육, 주거지원, 청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 (기금목적)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 ❖ (기금성격)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
- ❖ (규모/기간) 연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 (운영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 관리·운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위탁
- ❖ (배분원칙)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배분(차등)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정액)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괴산군	39,393	38,122(△1,271)	37,055(△1,067)
단양군	29,155	28,331(△824)	27,767(△564)
보은군	32,412	31,878(△534)	31,455(△423)
영동군	47,475	45,773(△1,702)	44,956(△817)
옥천군	50,527	50,093(△434)	49,520(△573)
제천시	133,018	131,591(△1,427)	130,988(△603)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